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7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7월 8일

3. 제안이유

현재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고압가스제조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업 허가 등 고압가스 관련 업무를 시장·군수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에 행정편의 제공

4. 주요골자

- 고압가스제조허가(냉동제조업)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권한 위임
-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권한 위임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현재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고압가스제조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칙 부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